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6년 5월 17일

나. 회부일자 : 1996년 5월 17일

3. 제안이유

공업단지조성사업 세입, 세출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조성사업비를 독립회계인 특별회계를 제정 운영코자 하는 것임.

4. 주요골자

- 세입내역 : 보조금, 기채, 선수금, 기타수입등
- 세출내역 : -토지매입비
 - 지장물 보상비
 - 이주대책비
 - 조성사업의 공사비
 -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경비
 - 조성에 직접 소요되는 기채이자, 정산금, 이주대책 소요 사업비
 - 기타공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 전입 : 독립채산 원칙
 - 세출부족액 발생시 일반회계 전입
- 준용규정 : 조례외의 내용은 일반회계 준용.

5. 검토의견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증평출장소관내에 설치코자하는 공업단지 조성과 관련 그에 따른 추진 사업의 제반 여건상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관리 할 필요성이 있는바, 특별회계를 설치하되 이 회계의 수지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그 세입 분야에 있어서는 공업용지 매각대, 국비보조금, 지방비보조금, 기채, 납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세출의 분야는 토지매입비·지장물 보상비·공업용지조성공사비·부대시설비·사업비·기채이자·정산금·이주대책소요사업비·기타공업용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정하여 관리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지방공업단지의 육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꾀하고 대도시와 연결된 입지적 조건상 공업단지육성에도 적지인것으로 판단되는바,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첨 부

-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